

내부거래위원회규정

Version 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목 차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4
제2조 (적용 범위).....	4
제3조 (권한).....	4
제2장 구성	4
제4조 (구성).....	4
제5조 (위원장).....	5
제3장 회의	5
제6조 (소집권자)	5
제7조 (소집절차)	6
제8조 (결의방법)	6
제9조 (부의사항)	7
제10조 (보고사항)	7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7
제12조 (이사회와의 관계)	8
제13조 (의사록)	8
제4장 기타	8
제14조 (사무국)	8
제15조 (규정의 개폐)	8
부칙	9

제 1 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공정성 및 적정성 등의 확보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사회 내에 설치함에 있어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한다.
- ②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성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며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와 같은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 단,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검토사항)

-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검토한다.
- ② 위원회는 제 1항에 정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 방식,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1.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집행 경과와 실적
2. 기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사가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와의 관계)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3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에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기타

제14조 (사무국)

- ① 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②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1차 개정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